

영등포구의회
제189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7. 7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68호로 2015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- 가.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중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명문화
- 나. 통장 위촉권자는 구청장인데 반하여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에 맞게 위촉권자 변경하여 대표성 확보
- 다.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시간별로 규정된 수강료를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개정하여 강좌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강좌 개설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

3. 주요내용

- 가. 비례대표 구의원 당연직 고문 명시(안 제17조제1항)
- 나.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촉 및 위촉 해제

권한을 동장 → 구청장으로 변경(안 제17조제2항, 제20조)
 다. 수강료 징수기준(세분화된 기준에서 상한액 기준으로 변경)(별표1)
 - 수강시간별 수강료 규정 →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규정
 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가. 비례대표 구의원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 (안 제17조)

○ 현행 조문은 선출직 구의원만 해당지역 선거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 되었으나, 비례대표 구의원도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으로 변경함.

구 분	현 행	개 정
선출직 구의원	선거구 동 당연직 고문	선거구 동 당연직 고문
비례대표 구의원	규정없음	주소지 동 당연직 고문

- 선출직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을 말하며, 비례대표 구의원은 각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,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은 선출직 구의원만 해당 되었으나 비례대표 구의원도 주소지 등에 한해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-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를 비롯한 10개구에서 비례대표 구의원의 주민자치위원 당연직 고문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 (자치구 사례 별도 첨부)
-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¹⁾과 당연직 고문이 하는 일, 실질적 활동내용, 타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·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(안 제17조제2항, 제20조)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」에 의하여 통장의 위·해촉권자는 구청장인데, 본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

1)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② 주민의 문화·복지·편익증진에 관한 사항
 ③ 주민의 복지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
 ④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
 ⑤ 그 밖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위원 및 고문의 위·해촉권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어 형평에 맞게 위·해촉권자를 변경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-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조직이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, 동장은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. (비교표 별도첨부)
- 아울러,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에서만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따라서, 조직의 성격, 설치목적, 하는 일, 타구 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다. 수강료 책정 방법 변경 (안 제10조 별표1)

- 현행 수강료는 10시간 이하, 20시간 이하, 20시간 이상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월 13,000원 이하, 월 25,000원 이하, 월 30,000원 이하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목당 월 30,000원 이하로 통일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상한액 월 30,000원은 변동이 없으며, 상한액 범위 내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하도록 하였고.

- 25개 자치구의 수강료 상한액을 조사한 결과 양천구 20,000원부터 강남구 60,000원까지 징수하고 있으며, 30,000원이 12개구로 전체의 48%를 차지하고 있고, 35,000원 3개구, 25,000원 및 40,000원이 각각 2개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.

-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상한액 30,000원은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며, 또한 단순히 시간 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강좌별 특성에 따라 과목별로 신축성 있게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□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황 (2015.7.1 기준)

연번	구 별	비례대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명시 여부	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		1개월 수강료 상한액 (단위:원)
			등장	구청장	
1	영등포구	×	○		30,000
2	강남구	×	○		60,000
3	강동구	○	○		30,000
4	강북구	×	○		25,000
5	강서구	○	○		30,000
6	관악구	○	○		25,000
7	광진구	×	○		30,000
8	구로구	○	○		35,000
9	금천구	○	○		40,000
10	노원구	×	○		1시간 수강료 3,000
11	도봉구	○		○	40,000
12	동대문구	×	○		30,000
13	동작구	○	○		30,000
14	마포구	○	○		35,000
15	서대문구	×	○		30,000
16	서초구	×	○		30,000
17	성동구	×	○		30,000
18	성북구	×	○		30,000
19	송파구	○	○		30,000
20	양천구	×	○		20,000
21	용산구	×	○		37,000
22	은평구	○	○		35,000
23	종로구	×	○		50,000
24	중구	×	○		30,000
25	중랑구	×	○		금액한도액 없음